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3. 5.>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비고: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